교통부 관광서 국제관광객 유치 가속 확대 방안

여행업 해외 관광 단체 유치 장려 실시 요점

1.교통부 관광서(이하 본서이라 약칭함)은 중앙정부의 감염병 발생 후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 강화 및 전 국민의 경제적 성과 공유를 위한 특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본서 여행사와 해외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 여행사가 협력하여 해외여행 단체를 유치하도록 장려하고 국제 여행객의 대만 입국을 촉진하며, 코로나19 영향 이전의 대만 방문 여행객 수준으로 신속한 회복을 지향하고, 연간 국제 여행객의 대만 방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본 요점을 제정한다.

2.본서에 입안 등록된 종합여행사 또는 갑종 여행사(이하 신청자라 약칭함)는 해외 현지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단체여행사와 협력하여 비 중화민국 여행객으로 구성된 관광단체를 대만에 여행하도록 촉진하고, 여정이 2박 3일 이상인 자는 본 요점 규정에 따라 장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전 항목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여행 기간이 모두 본 요점 발효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여행단체 출발 3영업일 전까지 본 관광서 지정 사이트에서 장려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서는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신청 중단을 사전에 공고할 수 있다.

4.신청자는 각 관광단체별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본서의 다른 장려 (보조) 방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23년도 600개 단체, 2024년 900개 단체, 2025년 450개 단체의 신청 건을 한도로 한다. 그 장려 보조 금액은 다음 단체 인원수 및 여정 일수에 따라 정한다.  
(1) 4~7인: 5,000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1만NTD로 인상.  
(2) 8~14인: 1만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2만NTD로 인상.  
(3) 15~49인: 2만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3만NTD로 인상.  
(4) 50인 이상: 4만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5만NTD로 인상.

5.장려 보조금 신청은 본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자로, 신청자는 여행 단체가 대만을 떠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서 지정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일정 증명서와 각 관광단체의 인원수에 따른 여행업 책임보험 증명서 및 숙박 합법 업체 /합법 관광 숙박 업체 증명서

(2) 외국인 단체 여행객 명단: 성명, 국적, 여권번호 포함(또는 대만 입국 비자 번호 등 여행객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규정의 제한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후 면제 가능)

(3)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서약서(별첨 1)

(4)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수령증 및 해외단체 모객 여행사 수령증(별첨 2)

6.보조금 신청은 본서의 심사를 거쳐 동의한 자에 한하며, 장려 보조 금액은 신 대만 달러로 신청자가 제공한 계좌로 전액 지급되며, 신청자는 지급된 전액의 60%를 해외 단체 모객 여행사에 지급한다.

7.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건이 본 요점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서는 이를

기각하고,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이내에 보완 및 수정해야 하며, 보완

및 수정 통지 후에도 기한 내에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각한다.

8.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서는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장려 보조 승인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서면 행정처분을 통해 지급된 각 장려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사기, 뇌물,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및 자료에 은폐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 항목이 기타 법령 규정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장려, 보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보조금 집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본서에서 파견된 직원을 회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전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서는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본서 및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려(보조)를 3년간 정지한다.

9.본서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공공 협회 단체에 위탁하여 경비 신청, 심사 및 취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